

---

#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방향

---

'25. 12. 26.

기 획 재 정 부

# 순서

I. 2025년 국고채 발행 동향 및 평가 .....	1
II.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.....	2
III. 2026년 국채시장 정책방향 .....	3
1.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정비 .....	3
2.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.....	5
3. 국채 수요기반 확충 .....	6
4. 시장조성 내실화 등 PD 제도 개선 .....	8

## I. 2025년 국고채 발행 동향 및 평가

□ (발행) 두 차례 추정 등으로 총 226.2조원 발행(전년대비 +68.5조원)

○ 연중 발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, 외국인·보험사 등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 소화

▪ (외국인) 금리하락 기대,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외국인 국고채 자금 역대 최대 유입('25.1~11월 +54.8조원)

▪ (보험사) 자산·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위한 30년물 중심의 장기물 수요 지속

○ 연물별로는 금리수준,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 31.6%, 중기 29.8%, 장기 38.6%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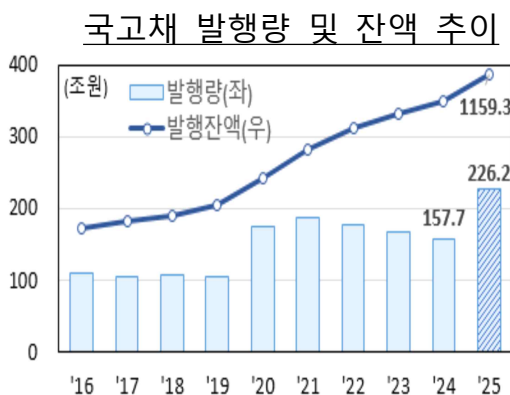
□ (시장 대응) 국고채전문딜러(PD, Primary Dealer) 등 시장참가자와 적극 소통하며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양호한 응찰률('25년 266.7%) 유지

○ 5월 중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물 발행 목표 비중을 조정\*하는 등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발행 연물 관리

\* 단기 30±3%, 중기 35±3%, 장기 35±5% → 단기 30±3%, 중기 30±3%, 장기 40±5%

○ 11월 이후 금리 상승 등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목적의 바이백 실시\*, 12월 발행물량 축소\*\* 등 시장안정 노력 강화

\* 잔존만기 3~5년 구간 중심 매입(1조원) / \*\* 전체 발행한도 대비 3.6조원 미발행



## II.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

- ◇ 금리하락 기대에 기반한 수요는 다소 약화될 수 있으나, WGBI 편입, 보험사 장기물 수요 등 고려시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양호할 전망
  - 다만, 국내외 통화정책 방향,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
- ⇒ 시장여건, 조달비용, 재정자금 소요 등 고려 시기연물별 발행계획 수립 + 시장참가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 대응

- (발행 한도) '26년 발행한도는 225.7조원 ('25년 발행 대비 △0.5조원)
  - (순증) 국고채 순증규모는 109.4조원 (△2.8조원)
  - (차환) 만기도래 국채 차환과 만기 평탄화를 위한 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발행 규모는 116.2조원 (+2.3조원)

	총발행	순증	차환	만기상환	시장조성
'25년(A)	226.2	112.2	113.9	94.0	19.9
<b>'26년(B)</b>	<b>225.7</b>	<b>109.4</b>	<b>116.2</b>	<b>90.5</b>	<b>25.7</b>
증감(B-A)	△0.5	△2.8	+2.3	△3.5	+5.8

\* '25년 총발행량에 개인투자용 국채 1.3조원 미포함

- (시기별 배분) 재정 집행(세출예산의 75% 상반기 배정), 만기상환 일정 등을 감안하여 **상반기에 55~60% 발행**

	상반기	1분기	하반기
<b>'26년 목표</b>	<b>55~60%</b>	<b>27~30%</b>	<b>40~45%</b>
'25년 실적	54.7%	26.7%	45.3%

- (연물별 배분) 시장수요 및 조달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단기 35±5%, 중기 30±5%, 장기 35±5% 배분**
  -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관리목표 범위를 ±5%p로 설정

	단기(2·3년)	중기(5·10년)	장기(20·30·50년)
<b>'26년 목표</b>	<b>35±5%</b>	<b>30±5%</b>	<b>35±5%</b>
'25년 실적	31.6%	29.8%	38.6%

- (시장조성) 조기상환·교환 등 재원을 25.7조원으로 설정하였으며, 매월 교환 집행(0.5조원 수준) 및 시장상황에 따라 바이백 시행

### III. 2026년 국채시장 정책방향

◇ WGBI 편입 등을 계기로 2026년이 “**선진 국채시장의 원년**”이 될 수 있도록 **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총력**

- ①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**국채투자 인프라 정비**
- ② 국채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**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**
- ③ 개인·외국인 등 국채의 근본적인 **수요기반 적극 확충**

※ **국채시장 조성 내실화 등 PD 제도개선 병행**

\* PD 개정 규정은 '26.2~3월 중 시행('26년 2분기 및 '26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)

#### 1.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정비

##### □ **경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과물 시장조성 및 유동성 제고**

○ **(현황)** WGBI 편입 개시('26.4~11월)로 경과물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이나, 지표물에 비해 **경과물의 유동성이 낮은 상황**

\* WGBI 지수에는 기 발행된 64개 종목('25.10월말 기준)이 시장가치에 따라 편입  
→ WGBI 추종자금 유입시 이미 발행이 완료된 경과물 수요 확대 예상

▪ 특히, 장기물은 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어 **유통이 부진하며**, 일부 연물은 **공급 부족** 등으로 **변동성 확대 가능성**

\* '25년 회전율(% , 1~11월) : <지표물> (3년) 3,927.3 (10년) 2,026.6 (30년) 1,756.0  
<경과물> (3년) 283.6 (10년) 84.9 (30년) 22.1

⇒ **(경과물 조성의무\* 부여)** 경과물 시장 가격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표물과 마찬가지로 PD에게 **조성의무 부여** **2분기**

\* 국고채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PD들은 매일 연물별 매수, 매도 호가를 제시

- ▶ (종목) 1년 미만, 물가채, 50년물 제외 7종목 이상 조성
- ▶ (배점) 정책협조 가점 1점, 종목·시간에 비례하여 부분점수 인정
- ▶ (조성시간) 지표물과 동일 ▶ (호가스프레드) 8bp 이내
- ▶ (평가) 2분기부터 적용. 다만, 1.12일 이후 시스템 시범운영 예정(호가제출 가능)

⇒ **(경과물 모집발행)** 경과물 거래물량 부족 해소를 위해 경과물 모집발행\* 정례 실시 **2월**

\* 경쟁입찰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금리로 특정 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식

- ▶ **(종목)** 시장수요, WGBI 편입비중(발행잔액), 유통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▶ **(시행)** 경과물 모집 정례 시행(2월·5월·8월·11월) 및 시장 수요에 따라 수시 시행

## □ 장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PD의 역할 강화

- **(현황)** 장기 경과물 수요 확대시,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적시에 경과물 유동성 공급 필요
  - 시장조성자로서 PD들의 물량공급 역할이 중요하나 장기물에 대해서는 가격변동 위험 등으로 보유·거래 등에 부담

⇒ **(장기물 보유·거래 가중치 조정)** PD의 장기물 보유·거래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분기·월평가 가중치 조정 **2분기**

- ▶ **장기물 보유 실적(분기평가, 4점) 가중치 조정**
  - (現) 잔존만기 5년 초과 : 2배
  - (改) 잔존만기 5년~10년 : 1.5배, 10년 초과 : 2배
- ▶ 유통 실적 월평가지에도 분기평가와 마찬가지로 장기물 거래 가중치 부여
  - 발행만기 10년 이상 국고채 거래 : 2배  
(물가연동국고채 거래는 분기평가(가중치 3배)와 달리 월평가에는 적용 안함)

## □ 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

- **(현황)**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 등 문제로 대부분 증권결제 전 날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원화대출을 이용하는 등 불편 존재
  - \*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한 원화자금 확보는 15시~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나, 당일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수탁은행 등 오전 중 결제자금 송금 필요
  - ICSD(국제예탁결제기구)를 통한 역외결제의 경우, 국내기관의 참여가 제한\*되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

\* ICSD 역외결제(국제예탁결제기구 내부 시스템을 통한 결제 방식)시, 국내기관의 국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기관의 참여가 원천 차단

⇒ **(채권결제 마감 연장)** 한은금융망 및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, 예탁원 결제 절차 소요시간 단축 병행 **4.1일**

\* 실제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자금 송금 시한이 오전 내 → 18시 이후로 개선

- ⇒ (ICSD 內 국내기관 참여 허용) 국내기관이 ICSD 內 국채의 이자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(25.11월)
  - \* ICSD 내 보유 국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: (기존) ICSD → (개선) 해당 국내기관
- 예탁원-ICSD 간 계약서 개정 및 국내기관 대상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본격 시행 예정 1월

## 2.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

### □ 국채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국채 정책 거버넌스 확충

- (현황) 발행량·발행잔액 증가 등 국채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내 1개과(국채과, 8명 규모)에서 국채 업무 전담
- ⇒ (국채담당 조직 개편) 국채시장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국채시장 및 연관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 대응 역량 강화 1.2일

- ▶ (국채정책과) ①국고채·재정증권 발행, ②국고채전문딜러(PD) 관리 업무, ③잔존만기·차환·이자 등 발행 및 국채 구조관리 업무 전담
- ▶ (국채시장과) ①국내외 국채 및 연관시장 동향 분석, ②부문별 투자자 분석, ③위험요인 대응 등 시장 분석 및 대응 업무 전담

### □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 체계 구축

- (현황) 주요 채권 발행기관의 발행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우려
- ⇒ (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운영) 주요 채권 발행기관간 발행계획 공유 및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방안 조율 금년 12월말

- ▶ (참여기관) 정부 및 정부보증채·공사채\* 등 채권시장 주요 발행기관
  - \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한국전력공사, 주택금융공사, 토지주택공사, 한국장학재단 등
- ▶ (운영계획) '25.12.29일 킥오프회의 개최 → '26년부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회의 개최

### 3. 국채 수요기반 확충

#### □ 개인의 국채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대폭 개편

(☞ 구체적 내용은 '25.12.30일 별도 발표)

- (현황) 5년물 도입('25.3월)에도 여전히 만기부담이 크고, 환금성이 낮아(중도인출 불가) 개인들의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
- 국채 수요기반 확충 및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적극 추진 필요

⇒ (이표채 방식 전환) 표면이자 정기 지급 및 이자 중도인출 허용

\*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한 이자 지급

⇒ (3년물 신설) 기존 연물에 비해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 도입

\*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, 분리과세 혜택은 미적용

⇒ (가산금리 확대) 장기물(10·20년물)에 대해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

⇒ (퇴직연금 투자 허용) 퇴직연금(DC형, IRP) 계좌를 통한 장기물(10·20년물) 매입 허용(연금형 장기국채 도입 효과)

\* 투자수익(원금+복리이자)은 55세 이후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소득으로 수령

#### □ 단기 국채 활성화 추진

- (현황) 최근 外人 투자 증가, MMF 성장 등 단기투자 수요가 증가하나, 단기국채 발행이 작아\* 단기자금의 국채투자 유입 제약

\* 단기국채 발행량('25년, 조원) :

(전체 국채) 307.6 / (재정증권<sup>28일</sup><sup>63일</sup>) 48.0, (원화외평채<sup>1년</sup>) 13.6, (국고채<sup>2년</sup><sup>3년</sup>) 71.4

국고채는 1년 이하 연물 미발행 ↴

- 단기국채 활성화를 통해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,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도모

\* 낙찰금리('25년 평균, %) : (원화외평채) 2.502, (국고 2년물) 2.507, (국고 3년물) 2.512, (국고 10년물) 2.862, (국고 30년물) 2.718

⇒ (국고채<sup>2년물</sup>) '21년 도입된 국고채 2년물 발행을 본격 확대하여 단기 국고채 대표 연물로 운영 **1월**

\* 2년물 발행량(조원) : ('21) 12.5, ('22) 15.2, ('23) 18.1, ('24) 15.3, ('25) 26.1

3년물 발행량(조원) : ('21) 36.1, ('22) 30.3, ('23) 29.5, ('24) 29.5, ('25) 45.3

⇒ **(원화외평채<sup>1년물</sup>)** 발행량\*을 지속 확대('27년~)하고, 정례 바이백 실시, 우수 입찰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수요확충 노력 병행 **'26년**

\* 원화외평채 발행(조원) : ('25) 13.6, ('26 한도) 13.7

⇒ **(재정증권<sup>28일·63일물</sup>)** 국고금 자금 조달시\* 재정증권 우선발행 원칙에 따라 한은 일시차입 축소, 재정증권 발행 확대 **1월**

\*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고금 관리법 §32조에 따라 일시차입 제도(재정증권+한은 일시차입)를 운영중

\* 재정증권 발행(조원) : ('21) 28.9 ('22) 16.3 ('23) 44.5 ('24) 49.8 ('25) 48.0

▪ 중장기적으로 재정증권 발행 정례화, 일물 다양화 등 검토

## □ 보험사 등 초장기물 수요에 대응하여 50년물 활성화

○ **(현황)** 최근 보험사의 자산·부채 듀레이션 관리\*를 위해 만기가 가장 긴 50년물 수요 증가

\* 장기 부채가 많은 보험사의 부채구조 특성상,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 완화를 위해 장기 자산 매입 필요

▪ 이를 반영하여 최근 발행량 증가에도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초장기 연물인 30년물 대비 발행금리도 낮은 상황

\* 50년물 발행량(조원) : ('20) 4.1 ('21) 4.6 ('22) 4.3 ('23) 4.8 ('24) 4.9 ('25) 8.4

\* 평균 낙찰금리('25년 평균, %) : (30년물) 2.718, (50년물) 2.655

▪ 한편, 현재 50년물은 인수 부담,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물에 적용되는 각종 발행·시장조성 제도 적용 제외\*

\* ❶ PD 의무 및 권한 : 인수 의무 제외(정책협조 가점<1점> 부여), 유통·시장조성 의무 제외, 비경쟁인수권한(옵션) 행사 대상에서도 제외

❷ 통합발행기간 : (50년물·물가채) 2년, (20년물) 1년, (기타 연물) 6개월  
↳ 동일 종목이 발행되는 기간

⇒ 투자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50년물 발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,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

▪ **(PD 인수 촉진<sup>단기</sup>)** 인수 실적에 대한 정책협조 가점 확대 (0.5→1점) **2분기**

▪ **(발행·시장조성 제도 개편<sup>중장기</sup>)** 향후 유동성 등 50년물 시장 성숙도를 보아가며 PD의 의무 및 권한 적용 범위 확대 검토

\* 인수 의무 적용, 비경쟁인수권한 부여, 통합발행기간 단축, 유통시장조성 의무 적용 등

## 4. 시장조성 내실화 등 PD 제도 개선

### □ 원금이자분리(스트립) 국고채 활성화 제도 현실화

- **(현황)** 스트립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트립 PD\*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, 현재 PD(18개사) 모두 스트립 PD로 지정되어 별도 운영의 실익이 낮음

\* 스트립 채권의 호가조성을 전담하는 전문딜러(PD 중 별도 신청을 통해 지정)

- 한편, 스트립 PD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인수권한(옵션) 한도는 최근 30년물 발행 증가 등 연물별 비중 변화 미반영

⇒ **(스트립 PD 폐지)** 스트립 PD를 폐지하고 모든 PD에게 스트립 호가조정 의무 및 스트립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**2분기**

⇒ **(옵션 배정금액 조정)** 모든 연물에 대해 스트립 옵션을 차등 부여하고 연물별 발행비중 등을 고려하여 배정금액 조정\* **1월**

\* 최근 발행비중이 증가한 3년물·5년물·30년물 확대, 발행비중이 감소한 20년물 축소

#### ▶ 스트립 비경쟁인수권한 운영(안)

(단위: 억원)		3년물	5년물	10년물	20년물	30년물	계
배정 금액	현행(A)	2,340	2,340	2,840	1,800	2,840	12,160
	개선(B)	2,840	2,840	2,840	1,460	3,300	13,280
	B-A	+500	+500	-	△340	+460	+1,120
사별 물량 (우수PD순 추가 배분)		기본 130 (+50)	기본 130 (+50)	기본 130 (+50)	기본 70 (+20)	기본 150 (+60)	-
행사 한도		연물별 사별 250 (잔여물량은 평가실적 순으로 배정)					

### □ 호가 조성 제도 내실화

- **(현황)** 시장조성 의무에 따라 제출된 조성호가의 다수가 제출 후 바로 취소\*되어 실질적인 시장가격 조성 효과 저해

\* 조성호가 취소 후 3분 이내 신규 제출시 미제출시간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 인정(3분률)

- 한편, 매수-매도 호가 제한범위(전일종가 ±20~30%)가 넓어 주문 실수(fat finger) 발생시 대규모 손실 위험 노출

\* 주식에 비해 채권은 가격변동률이 크지 않아 국채시장 일중 가격변동률 평균값이 1% 미만('08년~25.4월)

⇒ **(시장조성 유효도 평가 도입)** 시장조성 의무 평가시 호가 유지 시간에 따른 평가점수 별도 배점(3점) **2분기**

- ▶ 유지시간별 점수: (~1초) 0.0 (~3초) 0.1 (~5초) 0.3 (~7초) 0.5 (~10초) 0.7 (~15초) 1.0 (~20초) 1.5 (~30초) 2.0 (30초~) 3.0
- ▶ 배점 : 전체 조성점수(30점) 중 3점 별도 배점

⇒ **(호가가격제한 범위 축소)** 과거 가격 변동성, 금리민감도,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 제한범위를 전일종가의  $\pm 5\sim 20\%$ 로 축소 **1.12일\***

\* 거래소 시스템 개편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결정

- ▶ **(지표·선매출)** 발행만기 10년 이하(물가채 포함) **5%**, 발행만기 10년 초과 **10%**
- ▶ **(비지표(50년물·스트립 포함))** 잔존만기 10년 이하 **10%**, 잔존만기 10년 초과 **20%**

## □ 국채선물 의무 거래 개편

○ **(현황)** 국채선물 중 10년물은 의무거래 대상, 30년물은 정책협조 항목을 통해 거래실적 평가(업권별 거래량의 110% 이상 거래시 각 1점)

- (10년 선물) 도입 초기('10년),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의무 부과  
↔ 현재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10년물에 한해 의무 부과 필요 낮
- (30년 선물) '24년 도입 이후 아직 거래 저조, 장기물 수요 증가 감안시 금리변동위험 헤지 수단으로서 시장 활성화 필요

\* '25년(1~11월) 국채선물 거래량(계약) : (3년) 208,636, (5년) 9, (10년) 104,476, (30년) 123

⇒ **(의무거래 대상 확대)** 특정 연물에 한정하기 보다는 국채선물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거래 대상을 전체 연물(3·5·10·30년)로 확대 **2분기**

- (3·5·10년) 연물 구분없이 업권별 전체 평균 거래량의 110% 이상 거래시 1점 부여
- (30년)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, 시장 안착 지원을 위해 별도의 거래실적 평가점수 1점 유지

## □ 단기물 거래 과열 방지를 위해 유통시장 거래 의무 조정

○ **(현황)** 국고채 유통시장 조성의무 이행을 위해 PD사들은 업권별로 평균 국고채 거래량의 110% 이상 거래 실적 달성 필요

- 거래 과열에 따른 단기물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이상 거래일\*은 유통시장 거래실적 평가시 제외하고 있으나, 최근 3년물 중심으로 거래 과열 발생\*\*

\*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상한 배수 초과시 거래실적 평가에서 제외

\*\* '25년(1~11월) 거래량 증가율(전년 대비, %) : (3년물) 94.9, (전체) 31.2

⇒ (단기물 실적 인정 상한 배수 조정) 5년물 이하 및 스트립에 대해 이상 거래일 판단 기준이 되는 실적인정 상한 배수 하향 **2분기**

- (2년물·3년물·스트립) 現4배 → 改3배, (5년물) 現6배 → 改3배

\* 2·3년물만 조정시, 5년물 과열 우려(풍선효과)가 있어 5년물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

⇒ (유통시장 의무비율 조정\*) 유통시장 의무비율을 1분기 한시적으로 110 → 100%로 조정 **1월**

\* (PD규정 §32② 단서)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의무비율 조정 가능

#### □ 우수 PD 선정 방식 변경('26년 상반기 우수 PD 선정시 적용)

- (현황) 우수 PD 선정(총 6개사)\*시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여 쿼터 적용 중\*(<sup>①</sup>최우수 1개사, <sup>②</sup>은행·증권사별 각 2개사<sup>쿼터</sup>, <sup>③</sup>차상위 1개사)

\* 반기별 우수 PD사에는 부총리 표창, 비경쟁인수 행사 한도 우대 등 혜택 부여

- 선정 방식이 복잡한 반면, 업권간 순위 편차가 큰 경우 실적 실적과 과도하게 괴리된 결과 발생 가능

\* (예시) 종합실적 기준으로 1위, 8위, 9위(A업권), 2~7위(B업권)인 경우,  
<sup>①</sup>1위(최우수 PD(A업권)), <sup>②</sup>2위 및 3위(B업권) + <sup>③</sup>8위 및 9위(A업권), <sup>④</sup>4위(B업권) 선정  
 → 업권별 쿼터에 따라 5~7위사는 우수 PD에 선정되지 못함

⇒ (업권별 쿼터 적용방식 변경) 업권별 쿼터는 유지하되, 각 사별 실적 반영도가 높아지도록 선정 방식 단순화 → 업권 구분없이 순위에 따라 후보 선정 후 쿼터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**상반기**

\* (예시) 종합실적 기준으로 1위, 8위, 9위(A업권), 2~7위(B업권)인 경우,  
<sup>①</sup>1~5위(최우수 PD(A업권) 및 B업권 4개사) + <sup>②</sup>8위(B업권 쿼터) 선정

#### ※ (참고) 제도개선 후 PD 평가 배점 변경(안)

		인수	보유	호가	유통	선물 거래	스트립 거래	매입	Repo 거래	정책 협조*	계
배 점	현행	48	4	32	8	1	1	2	1	3	100
	변경	48	4	30	8	2	1	2	1	4	100

\* 정책협조 : 50년물 인수(1점), 경과물 시장조성(1점), 그 외 PD제도 운영협조 및 정책제안 등(2점)